

# 소 결핵병 · 부루세라병 근절
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 -

## 소 결핵병

### 소 결핵병이란?

-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만성적인 쇠약, 유량 감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모성 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임

### 소 결핵균의 생존기간

- 햇볕에서 수일, 토양 및 초지에서 1~2년, 퇴비 및 우사에서 2년, 물 1년, 분뇨 452~469일, 객담 2~6개월, 식육 10개월, 사체 4년동안 생존
- ▶ 원유의 고온 및 저온살균법에 의해 쉽게 사멸
- ▶ 소독제로는 5% 석탄산, 크레졸 등이 유효함

### 주요 전염원 및 감염경로

- 감염소 및 잠복감염소에서 배출된 콧물 등의 분비물
- 감염소 및 잠복감염소와의 접촉감염
- 오염된 사료, 물 등에 의한 경구감염
- 임신소에서 태아의 태반감염 및 우유를 통한 송아지 감염

### 주요 임상증상

- 감염 초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으나 계속해

서 쇠약해짐

- 중증인 경우 쇠약, 기침, 호흡곤란, 피부의 임파절이 크게 됨
- 부검시 폐, 흉벽, 임파절 등에 특징적인 결핵결절이 형성됨

## 소 부루세라병

### 소 부루세라병이란?

- 임신 후반기의 유산, 불임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임

### 소 부루세라의 생존기간

- 햇볕에서 2~5시간, 실온 5일, 토양 37일, 유·조산 후산물내에서 수주~수개월 생존가능
- ▶ 원유의 고온 및 저온살균법에 의해 쉽게 사멸
- ▶ 일반 소독제에 쉽게 사멸

### 주요 전염원 및 감염경로

- 감염소 및 잠복감염소에서 배출된 자궁 등의 분비물
- 감염소의 양수, 후산물, 질점액 등에 의한 접촉감염 및 우유를 통한 송아지감염
- 오염된 사료, 물 등에 의한 경구감염

- 교미나 인공수정시 정액을 통한 생식기 감염

### 주요 임상증상

- 임신 6~8개월령의 초산우에서 주로 유·조산 발생, 후산정체, 유산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
- 유방의 종창, 경화, 열감, 동통 등을 나타냄
- 숫소에서는 고환염, 관절염 등을 유발

### 소결핵 및 부루세라병의 주요전파요인

- 발생농가의 감염소와 동거사육소의 접촉, 발생농가의 오염된 제거 부실 등으로 동일농장에서 반복 발생
- ▶ 소결핵 및 부루세라병의 만성적인 질병 특성으로 축주의 질병위험인식이 미흡함
- 무분별한 소 구입으로 잠복감염소 입식

### 농가에방수칙

#### 소 구입시

- 결핵 및 부루세라병 비발생농가의 소임을 확인하고 질병검진카드 확인(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 문의) 후 입식
- 입식시 다른 소와 격리사육하고 검진 후 합사
- 무분별한 소 구입 자제

#### 사양 및 위생관리

- 자연 교미시 종모우 검사
- 건유기때 격리하여 함께 사육하고 있는 소와 접촉차단
- 유산태아 및 후산물 처리(소각 또는 매몰)를 철저히 하여 전염원을 제거하고, 개·고양이 및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
- 유·조산소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에 질병검진을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
- 가축방역기관의 정기적인 질병검진을 받아야 함

### 농장관리

- 축사주변 및 축사내 정기적인 소독 실시
- 이웃농장의 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
- 농장내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
- 농장입구에 생석회 도포 등으로 외부 병원체 유입방지

### 정부에서 추진중인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은 다음과 같다!

#### 1. 소결핵 및 부루세라병 검색

- 소 결핵병에 대하여는 생후 12개월령 이상의 젖소(제주도의 경우 한우·육우 포함)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검진 실시
- 소 부루세라병에 대하여는 집합원유에 대한 스크린 검사후 양성 또는 의양성이 나타날 경우 납유농가를 추적하여 개체별 혈청검사 실시

#### 2. 검사 결과의 기록 관리

- 농가에서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"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사기록부" 사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
- 농가에서는 검사받은 소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(도축용 제외)할 때에는 검사기록부 사본 1부 또는 검사증명서 사본 1부를 매입자에게 주어야 함

#### 3. 양성농장의 방역 조치

- 양성축은 살처분하고, 동거사육소에 대하여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
- 동일 농장내 검사두수의 1/3 이상이 감염소로 판정된 경우 전두수 살처분 또는 도태 후 보상
  - ☞ 도태 권고기한 내 도태를 이행하지 않아 재발생될 경우 보상금 차등 지급함